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85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안 제30조 의3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7. 1.

다. 회 부 일 : 2025.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안 제30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제1항).
-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응급장비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화 대상에 응급장비의 위치정보 관련 기술을 추가함(안 제34조 제3항 제3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u>개인위치 정보</u> 이용 <u><신 설></u>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u>위치정보</u> 이용 제30조의3(응급장비의 <u>위치정보</u> 표시의무) ① 서비스의 유형,

현행	개정안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	<u>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위치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긴급구조와 <u>그 밖의</u>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3. ----- <u>응급장비의 위치</u> <u>정보 등</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⑤ (생략)	④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공공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¹⁾.
-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받은 정보를

1)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토대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인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응급장비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0조의3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등록된 응급장비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기반서비스에 해당 정보를 연계·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응급장비의 위치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서 정의한 ‘위치정보’에 해당하려면 ①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의 위치 관련 정보이면서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정보이어야 하나²⁾,

응급장비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치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응급장비의 위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받은 신고에 기반하므로 정보의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확한 정보가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단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정보를 활용할 뿐 응급장비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정보가 위치기반서비스에 오(誤)표시되어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치기반서비스에 제공된 응급장비 위치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의 목적은 위치정보의 안전한 제공 및 이용으로 응급장비의 위치를 지도 서비스 등에 표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보다는 응급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보건복지부는 응급장비의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기반서비스 표시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정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서비스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동성이 없는 응급장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치정보법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지지 않도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표시한 응급장비 위치정보는 중앙응급센터 등이

제공한 데이터임을 명시하고 면책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